

2022년도 대학재정지원 사업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

< 2023.8.22,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>

◇ 2022년도에 실시하였던 대학재정지원 사업비 정산 관련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,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※ 지적사례는 2021년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적용하여 점검된 결과이므로 사업비 집행 시 해당 사업년도 집행기준 확인 요망

1. 공통 지적사례

유형	주요 내용	비율*		비고
		2021	2022	
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	• 인건비 부적정 집행	9.9%	22.9%	p3~p6
	•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 체험활동, 관광성 비용 등 집행			
	• 프로그램 운영 시 사업과 무관한 경비 집행			
	• 기타 사업과 무관한 경비 집행			
대학 자체 지급기준 초과 집행	• 전문가활용비(강사료, 자문비, 심사비 등) 초과 집행	50.5%	50.0%	p7~p10
	• 회의비(식대) 초과 집행			
	• 기념품비 초과 집행			
	• 여비(숙박비) 초과 집행			
교재(교안)개발비 부적정 집행	• 기존 발간된 서적의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된 원고료 등 집행	-	1.4%	p11~p12
기존 교직원 부적정 수당 지급	• 부가적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는 수당 지급	2.2%	3.6%	p13~p15
대학의 통상적/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	• 대학(학과) 홍보비 집행	13.2%	10.0%	p16~p18
	• 대학교 강사채용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			
	• 중앙도서관 서가 구입			
	• 우수인재 유지 홍보물품 구입			
	• 신입생 환영회 용역비 집행			
	• 기타 대학의 통상적 업무 운영경비 집행			
기타 부적정 경비 집행	• 회의비 부적정 집행	24.2%	12.1%	p19
	• 사업기간 외 사업비 집행			
	• 1년 미만 근무 퇴사직원에 대한 미집행 퇴직금적립액 미 환입			
	• 사업비 미집행 금액 미 환입			
합계		100%	100%	-

* 해당 지적건수 / 전체 지적건수

※ 사례의 세부내용과 사업별 집행기준·목적 등에 따라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

2. 사업별 지적사례

사업명	주요 내용	비율*		비고
		2021	2022	
4단계 두뇌한국(BK)21	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(건강보험 직장가입자) 집행	7.5%	3.3%	p20
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(전문대학 사업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건비 부적정 집행 •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게 예산만 지원한 사업비 집행 •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, 현금성 비용 집행 •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사업비 부적정 집행 -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동연구원 인건비 산출 부적정 • 기타 사업비 부적정 집행 	49.1%	46.7%	p20~p23
대학혁신 지원사업 (전문대학혁신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대가성 비용 집행 •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 응시료 등 지급 	39.6%	16.7%	p24
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건비 부적정 집행 •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	3.8%	-	-
대학창의적자산 실용화지원 (BRIGE+)	• 간접비 한도초과 집행	-	13.3%	p25
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건비 부적정 집행 • 기관지원경비 한도초과 	-	20.0%	p25
합계		100%	100%	-

* 해당 지적건수 / 전체 지적건수

1.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

□ 지적내용

① 인건비 부적정 집행

- □□□ 지역혁신 플랫폼은 ○○○대학 학생라운지 야간시간 운용 시 타 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초과근무수당 집행
- □□□ 사업단은 대학의 협력기관에 인턴으로 근무한 학생의 인건비 집행

②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체험활동, 관광성 비용 등 집행

- △△△ 사업단은 △△△ 프로그램 운영 시 현장체험비로 ○○월드(놀이동산) 입장료 집행
- ■■■ 사업단 교직원 워크숍 운영 시 사찰 등 단체관람비 집행
- ◇◇◇ 대학교는 미용계열(헤어디자인) 우수학생 미용관련 업체 견학체험 및 실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시 ○○○족욕 체험장 입장료 집행

③ 프로그램 운영 시 사업과 무관한 경비 집행

- △△△ 사업단은 성과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업과 무관한 내용의 특강을 진행하고 강사료 집행
- ●●● 사업단은 신입생에 대한 학과설명 등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세미나 내용과 무관한 미술관 관람료를 집행
- △△△ 사업단은 직원역량강화 및 성과공유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내부교원에게 기념품비 집행
- ○○○ 사업단은 신입교원 정착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시 신입교원의 교육·연구역량 증진 목적으로 팝페라 공연비 집행

④ 기타 사업과 무관한 경비 집행

- ☒☒☒ 사업단은 사업기간 중 매월 부서 서무에게 지출 절차 및 증빙 없이 일정액의 과운영비를 이체
- △△△ 사업단은 개인적 사유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집행
- ●●● 사업단은 사업단에서 사용하던 렌탈물품(정수기)의 중도해지위약금 집행
- ▽▽▽ 사업단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취업서포터즈 동계활동복비 집행
- ○○○ 사업단은 프로그램 관련 회의 시 도시락을 픽업하기 위한 택시비 집행
- 目目目 사업단은 홍보물품으로 와인선물세트 비용 집행
- ●○○ 사업단은 대학과 MOU 체결한 협력기관의 현판비 집행

□ 관련규정

- 모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함

① 국립대학육성사업

<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- 모든 사업비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

<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사용 관련 사례>

-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
- **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**

② 대학혁신지원사업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기본원칙

-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

③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

<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>

○ 사업비 집행 원칙

- (산학협력 고도화형)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인 **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**

※ LINC+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세부 항목에서 집행

- (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)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인 **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**

④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

<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>

○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- **모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집행 가능**하며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

⑤ 4단계 두뇌한국(BK)21사업

<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>

제5조(사업비 증양관리) ③ **사업비는 증양관리 하에 계획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시설 및 교사 건축 등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**

⑥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

<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_예산편성 및 집행 >

○ 사업비 집행 원칙

- 모든 사업비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**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비목별 편성내용·비율에 맞추어 예산 집행**

⑦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(LINC+) 육성사업

<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(LINC+)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>

○ 사업비 집행 원칙

- (산학협력 고도화형)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·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인 **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**

※ LINC+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세부 항목에서 집행

- (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)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인 **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**

⑧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

<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사업비 편성 및 집행

-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'인건비', '교육체계 개편비/소과제 구성·운영비', '기자재 구입·운영비', '환경 구축 및 개선비(시설비)', '기타 사업운영비'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·집행

⑨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지원(BRIDGE+) 사업

<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지원(BRIDGE+)사업 사업비 관리운영 지침>

○ 사업비 집행 원칙

-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개발 촉진 및 성과 창출 등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

※ BRIDGE+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직접비 세부 항목에서 집행

2. 대학 자체지급 기준 초과 집행

□ 지적내용

① 전문가 활용비(강사료 등) 초과 집행

- “교수법 수업 설계 워크숍 특강”을 진행하면서 C급으로 분류되는 2명에게 B급기준을 적용하여 특강료 집행
- ◇◇◇ 사업단은 자체평가회의 시 외부평가위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닌 특강료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을 초과하여 사업비 집행
- ■■■ 사업단은 “2021년 성과확산 포럼” 행사를 진행한 사회자에게 지급한 전문가활용비는 강사료를 초과하여 사업비 집행
- ◆◆◆ 국립대학은 “초·중·고 교원역량강화 워크숍” 진행 시 ‘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’을 초과하여 강사료를 집행
- “○○○ 교과목 컨설팅”을 진행하면서 총 5회(1학기 3회, 2학기 2회)의 컨설팅을 회당 3회의 서면 자문료로 계산하여 자문료 집행

② 회의비(식대) 초과집행

- ○○○ 사업단은 자체기준 상 심야, 주말, 휴일 회의비 집행은 불가하나 종합 실적보고서 회의를 하고 일요일 23시 10분에 회의비를 지출
- ○○○ 대학교는 성과보고회 개최 시 행사 참석 대상자 외의 인원을 포함하여 다과비를 집행 자체 지급기준을 초과함

③ 기념품비 초과 집행

- ■■■ 사업단은 “△△△ 학생핵심역량 진단프로그램”을 운영하면서 기념품을 구매하였으나 1인당 자체기준을 초과하여 사업비 집행

④ 여비(숙박비 등) 초과 집행

- ♥♥♥ 사업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비 자체기준을 초과하여 사업비 집행

□ 관련규정

- 해당 사업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대학에서 정한 자체기준으로 계상 및 집행

① 국립대학육성사업

<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-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'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령(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포함)'과 동 지침을 따름
- ※ 사업비 집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, 기본계획, 동 지침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(지침) 등을 수립하여 관리 가능

② 대학혁신지원사업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기본원칙

- 사업비 집행절차 및 세부 집행방법은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, 동 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립한 대학 자체 지침에 따름

③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

<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>

○ 사업비 집행 원칙

- 대학 총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사업관리규정,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

④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

<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 >

○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-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

⑤ 4단계 두뇌한국(BK)21사업

<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>

제15조(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)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원활한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연구단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 제61조를 따른다.

1.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
2.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
3.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(평가기준 포함)
4.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
5.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(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).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
6.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

⑥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

<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_예산편성 및 집행 >

○ 사업비 집행 원칙

- 모든 사업비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**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비목별 편성내용·비율에 맞추어 예산 집행**
-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, 체질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
- 대학의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함
 - ※ 3유형 대학 중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, 후진학 선도대학(주관대학)과 계약한 예산 범위 내에서 협력대학으로 이체하여 집행 가능하며, 협력대학에서의 사업비 관리도 중앙관리를 실시해야 함
 - ※ 사업비 집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필요시 **관계법령 및 기본계획, 동 사업의 규정·정의서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(지침) 등을 수립하여 관리 가능**

⑦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(LINC+) 육성사업

<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>

○ 사업비 집행 원칙

- **대학 총장은**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**관계법령 및 사업관리규정,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**

⑧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

<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항목별 세부 집행기준

- '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'에 인건비, 식비, 여비, 강사료, 연구비 등의 지급단가 및 세부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반드시 명시

⑨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지원(BRIDGE+) 사업

<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지원(BRIDGE+)사업 사업비 관리운영 지침>

○ 사업비 집행 원칙

- 대학 총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사업 관리운영 규정, 사업비 관리운영 지침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

3. 교재(교안) 개발비 부적정 집행

□ 지적내용

- ○○○사업단은 프로그램개발운영비 대학원 핵심교과목 교안을 위한 원고료를 집행하였으나, 기존 발간된 교재 및 서적 등의 내용을 인용
- ○○○대학은 ◇◇◇전공 교과목 개발비를 집행하였으나, 한 학기 강의에 대한 학생의 강의평가내용, 수업 시 사용되는 PPT의 내용 등으로 구성 됨

□ 관련규정

-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불가함

① 국립대학육성사업

<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_[별표]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>

○ 프로그램개발·운영비

- (정의) 사업계획과 연관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료, 동 사업을 위해 신규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 등 지급 가능
- (집행 불가사항(사례)) 기존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불가

② 대학혁신지원사업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_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>

○ 교육·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

- 교원 개인연구활동 지원비
- 중복·이중지원 경비(기본 교재에 대한 원고료 등)

※ 사업 수행에 따른 부가적 업무 수당(강사로 및 교재개발비 등) 지급 가능

단, 국립대학 내부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 회계 예산 편성·집행 기본지침에 따른 해당 목(운영수당, 연구용역비 등)으로 편성하되, 동 지침 상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대학별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집행

③ 4단계 두뇌한국(BK)21사업

<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>

제29조(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)

[주요 집행제한 항목]

- 중복 및 이중지원 성격의 경비
 - LINC+, 국립대학 육성사업, 대학혁신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
 -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등

④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

<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_비목별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 >

○ 프로그램개발운영비

- (기준)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(원고료), 강사료 등 지급 가능
- ※ 단, 구체적인 산출물(결과보고서 등) 및 증빙 자료 구비
- (불가(부적정집행사례)) 기존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불가

⑤ 4단계 두뇌한국(BK)21사업

<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>

제15조(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)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원활한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연구단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 제61조를 따른다.

1.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
2.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
3.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(평가기준 포함)
4.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
5.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(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),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
6.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

⑥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

<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_비목별 정의 및 집행 불가 항목 >

○ 교육·연구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

- (사용용도)
 - 교육·연구프로그램 개발비: 전공·비전공·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, 신규 교재개발,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
- (집행 불가항목) 기존교재 원고료 지급 등 중복·이중지원 경비

⑦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

<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_항목별 세부 집행기준>

○ 교육체계 개편비/소과제 구성·운영비

[주요 집행 제한 항목]

-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, 기 개발된 교재에 대한 원고료

4. 기존 교직원 부적정 수당성 경비 지급

□ 지적내용

- ○○○사업단은 2021년 정규교과목 강의평가 우수교원에 대하여 시상금을 사업비로 집행
- ○○○사업단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중간고사, 기말고사의 학점에 부여되는 과제물(소감문) 평가에 대한 전임교원 및 비전임 교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집행

□ 관련규정

- 기존 교직원에게는 부가적 업무로 볼 수 없는 수당 및 인건비는 집행 불가함

① 국립대학육성사업

<국립대학육성사업관리지침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사업비 수혜 대상

-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연계한 세부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함

·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,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강의료, 원고료, 정책연구비 등은 집행 가능

※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, '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'으로 편성하여 해당 지침에 따라 집행

<별표 1>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

○ 집행불가사항(사례)

- (인건비) 소속 교원 등 내부구성원의 급여 및 금전적 인센티브는 지급 불가

② 대학혁신지원사업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

비목	집행 불가 항목	비고
1. 인건비	-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,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수당 등	
3.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	- 교원 개인연구활동 지원비 - 중복·이중지원 경비(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등)	- 사업 수행에 따른 부가적 업무 수당(강사료 및 교재개발비 등) 지급 가능 ※ 단, 국립대학 내부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 회계 예산 편성·집행 기본지침에 따른 해당 목(운영수당, 연구용역비 등)으로 편성하되, 동 지침 상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대학별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집행

③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

< LINC+사업 산학협력 고도화형 자주하는 질의(FAQ) >

Q-16 사업단 참여학과 소속 교원 및 비참여학과 교원에게 수당 및 강사료 지급이 가능합니까?

A-16 사업단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**내부교원에게 별도의 회의 수당 및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.** 다만, 내부교원이 정규 교과목 외 LINC+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특별 강좌, 산업체 재직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자체 규정에 따라 강사료 지급이 가능합니다.

※ LINC+사업 중점형 FAQ "Q-8, A-8" 과 동일

④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

<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>

○ 사업비 수혜 대상

- 내부 교직원에 대한 수당성 경비 집행 불가

- 단,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 수행(세부 사업 관련 특강, 비정규 강의,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)에 따른 강의로 및 원고료 지급 가능

※ 내부 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로 및 원고료 등 지급 시 "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"에 따라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으로 편성 가능

⑤ 4단계 두뇌한국(BK)21사업

<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>

제20조(교육과정 개발비) 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비, 교재 개발비, 사례조사비, 외부전문가 활용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과정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필요성, 목적, 근거, 결과물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으며, **내부 구성원(교육연구단 소속 학과)에 대한 수당 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.**

⑥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

<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 >

○ 비목별 정의 및 집행 불가 항목

비목	정의	집행 불가 항목	비고
3.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발운영비	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원 개인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 - 기존교재 원고료 지급 등 중복이중지원 경비 -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직접 지원금(현금, 물품) - 입학 전 신입생, 휴학생, 졸업생, 졸업유예생 직접 지원금 -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 지원금 -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장학금 II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 불인정 - 사업 수행에 따른 부가적 업무수당(강사료 및 교재개발비 등) 지급 가능 ※ 국립대학 내부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'국립대학 회계 예산 편성·집행 기본지침'에 따른 해당 목(운영수당, 연구용역비 등)으로 편성하되, 동 지침 상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대학별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집행
4. 인건비	교직원 및 사업 운영 보조인력 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, 성과급 및 사업관리운영수당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건비 지출 시 신규채용 증빙 필요

⑦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(LINC+) 육성사업

<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>

○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

-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출물(결과보고서 등)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

[주요 집행 제한 항목]

- 내부 교원에게 수당 지급 불가(내부 교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, 심사비 등)
- 프로그램 진행관련 보조요원(조교 등)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 지급 불가
-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수당 지급 불가(장학금성 경비, 멘토링비 등)
- 既취창업자에 대한 개인적 수당·여비 등 지원 불가
- ※ 졸업생에 대한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공동 교육 기자재와 인프라 시설 사용은 가능하나 수당·여비 등은 지원 불가

⑧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

<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[주요 집행제한 항목]

○ 인건비

- 기존 교직원 및 기관 직원에 대한 급여, 직무교육비, 연수비 등
-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및 총괄운영센터, 대학교육혁신본부 및 핵심분야별 팀 등 실무추진단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(보고서 작성 수당, 위원회 참석수당, 보직수당, 자체평가 수당, 정규강의 수당, 전산개발 수당 등)

○ 교육체계 개편비/소과제 구성·운영비

- 내부교직원의 경우 단발적 특강, 기존 교육체계 내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집행 지양

4. 대학의 통상적인 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

□ 지적내용

① 대학(학과) 홍보비 집행

- ■■■■ 사업단은 대학스포츠단 홍보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7관왕달성 등의 내용으로 학교버스 홍보 래핑 재제작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
- ●● 대학은 학술제 및 졸업작품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입시상담 전화번호 기재 등 사업과 무관한 대학(학과) 홍보용으로 제작된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비를 사업비 집행
- 입학 홈페이지 구축 비용,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물품비, 대학 홈페이지 게시되는 국문뉴스의 영문 번역비용 등을 사업비로 집행

② 기타 대학의 통상적인 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

- 대학재원으로 구매한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, 연간보험료를 사업비로 집행
- ㉠㉠ 대학교는 학교축제(대동제) 진행을 위한 용역비를 사업비로 집행
-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사업의 일부로 교직원 식당의 CCTV 구입
- 중앙도서관 서가 구입, 신문 구독료, 강사채용을 위한 온라인서비스 이용료, 의과대학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증비 등을 사업비로 집행

□ 관련규정

-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 업무 및 경상경비는 교비로 집행

① 국립대학육성사업

<국립대학육성사업관리지침 사업비 집행 및 관리>

○ 사업비 지원

- 대학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, 환경개선비,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, 기자재구입비, 인건비 등에 사업비 집행 가능

<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 구분>

- 가. 인건비
- 나.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(학생 교육·실습 활동비 포함)
- 다.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·운영비
- 라. 강의실 및 실험·실습실 환경 개선비
- 마. 교육·연구력 증진 및 실험·실습 기자재 확충
- 바. 장학금
- 사. 기타사업운영비

※ 세부내역별 기준은 "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(별표1)"를 참조

- 대학의 경상경비는 집행 불가

※ 예) 공공요금 및 제세 등

② 대학혁신지원사업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기본원칙

-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

○ 비목별 집행불가 항목

비목	집행 불가 항목	비고
6. 기타 사업운영 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 -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,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-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-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교육·연구·산학협력·기타 활동 수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여비, 도서구입비, 일반 수용비, 홍보비, 회의비, 각종 행사경비, 신규 채용인력 공개 임용시 소요비용 및 타 비목으로의 편성이 곤란한 항목 편성·지급 가능

③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

<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>

○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- 모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며 **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**

④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

<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_비목별 정의 및 집행 불가 항목>

○ 직접비

항목	사용용도	집행 불가항목	비고
바. 그 밖의 사업 운영경비	여비, 교육활동지원비, 도서 구입비, 일반수용비, 홍보비, 회의비, 각종 행사경비, 신규 채용인력 공개임용 시 필요 경비 등 교육·연구·산학협력 등의 활동 수행 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 2) 사업과 무관한 대학홍보비 및 행사비,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3)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4) 사업효과가 미비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 5) 학원수강료 및 외국어시험 응시료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관계법령 및 대학 내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하고, 증빙서류(활동 보고서 일가 포함된 회계 등) 구비 2) 도서구입비는 대학 내 관리대상 비치 및 관리

⑤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

<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>

[주요 집행제한 항목]

○ 교육체계 개편비/소과제 구성·운영비

[주요 집행 제한 항목]

- 내부교직원의 경우 단발적 특강, 기존 교육체계 내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집행 사양
-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교육체계 개편 내용 및 소과제 운영비
-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, 기 개발된 교재에 대한 원고료
-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
-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(직원 워크숍 경비 등)
- 대학 교육 혁신 및 과제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
- 대학교육 혁신 및 과제추진 목적과 무관한 대학 학술활동 지원비, 홍보비(각종 광고, 입시설명회, 신입생 모집공고, 대학 브로셔(리플릿), 단순 기념품 제작비 등) 및 행사비, 선물구입비
-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및 주류 구입 비용
-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, 외유성 출장비 등

5. 기타 부적정 경비 집행

□ 지적내용

① 강사료 부적정 집행

- [] 사업단은 [] 주제로 재직자 교육을 계획하였으나, 계획 이후 실제 시행되지 않은 교육에 대한 강사료 집행

② 사업기간 외 사업비 집행

- [] 사업단은 북킷리스트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를 사업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라이선스비용을 집행
- [] 사업단은 사업기간이 2021.6.1.~2022.4.30.까지인데 2022.5월 귀속급여를 집행

③ 회의비 부적정 집행

- [] 사업단은 관련 증빙(회의록)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(회의장소와 회의비 지출장소 불일치)
- [] 사업단은 2021.10.21.~2022.01.15.까지 매주 월요일 18시~20시에 회의를 진행하였으나, 관련 증빙자료 1건(2021.10.25.)에는 생크림 케익 15개 등을 일시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음

④ 기타 부적정 사업비 집행

- [] 사업단은 성과확산 워크숍 시 타 학교 관계자에게 일비를 지급
- [] 사업단은 사무실 임차보조금 집행
- 예산에 미 산입된 이자,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등 국고 미반납

□ 관련규정

- 사업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되어야 함

붙임2

사업별 지적사례

1. 4단계 두뇌한국(BK)21

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

□ 지적내용
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참여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 지급

□ 관련규정
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

<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운영지침 >

제11조(참여대학원생)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(부)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(全日制)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, 건강보험(지역가입자 제외),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(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.)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함

2.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(전문대학 사업 포함)

① 인건비 부적정 집행

□ 지적내용

- LINC+사업단은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총 인건비의 70%를 초과하여 집행
- LINC+사업단은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인건비 지원액 한도 4천만원을 초과하여 집행
- LINC+사업단은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아닌 초빙부교수 인건비를 전담인력 인건비로 집행
- LINC+사업단은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 집행

□ 관련규정

- 'LINC+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'에 따라, 인건비는 국고지지원금 총액 25% 이내, 인센티브는 국고지지원금 총액의 2% 범위내 집행 가능

<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(전문대학 포함)>

<산학협력 고도화형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 집행 기준>

○ 인건비(25% 이내)

- '산학협력중점교수'는 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의 70% 이내를 지원하며 1인당 국고지원금은 4천만원(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) 초과 불가 (단,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지원 제외)

②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게 예산만 지원한 사업비 집행

□ 지적내용

- ○○○ 대학 LINC사업단은 산업체에 대한 기술자문 등 기술지원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 홍보영상 제작비용 집행

□ 관련규정

-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집행 불가함

1.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

<산학협력 기업지원비>

- 지역사회 및 기업 맞춤형 지원비
- 산학협력 서비스 원스톱 제공 지원
-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, 포럼
- 산학협력협의체 운영
- 기업별 성장단계 및 산업분야별 맞춤형 All-SET 지원
- 애로기술(기술, 경영, 디자인 등) 및 컨설팅
 - ※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(산학협력기업지원비는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일방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학협력을 이행함을 의미함.)
- 산업체 재직자 교육지원
- 산학연계 기업지원 관련 외부 위탁 용역 비용

2. 사회맞춤형 선도전문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

<기업지원 등 협력 활동비>

- 기업신속대응센터 구축 및 운영 비용
- 산학협력 서비스 원스톱 제공 지원
- 기업별 성장단계 및 산업분야별 맞춤형 All-SET 지원
-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, 포럼, 산학협력협의회 운영, 산학협력가족회사 기술 지원, 애로기술(기술, 경영, 디자인 등) 지원 및 컨설팅, 산업체 재직자 교육지원, 기술지도수당 등
 - ※ 기술지도수당은 참여교원의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만 해당되며, 해당 산업체에서 기술지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집행가능(학생지도에 대한 기술지도 수당 지급 불가)
 - ※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(기업지원 등 협력 활동비는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일방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학협력을 이행함을 의미함)
- 산학연계 기업지원 관련 외부 위탁 용역 비용

⑤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, 현금성 비용 집행

□ 지적내용

- LINC+ 사업단은 2021학년도 ○○○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협약업체 방문회의 시 관계자 회의 참석 기념품비 집행
- LINC+ 사업단은 ▲▲▲ 학과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관방문용 치약세트, 과자세트 비용을 집행

□ 관련규정

- 산학협력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섭외비, 선물비 등은 집행 제한 항목임

1.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

<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 >

○ 사업단 운영을 위한 기타 사업 운영비

- LINC+사업단 운영을 위한 경비 집행(일반수용비 및 수수료, 여비, 홍보비, 업무추진비, 회의비, 각종행사경비, 사업운영을 위한 기타경비)

※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(홍보물, 상품권, 기념품 등)은 집행 불가

2. 사회맞춤형 선도전문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

< 주요 집행 제한 항목(2019.11개정) >

- 대학 홍보, 산업체 방문, 산학협력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섭외비, 선물비 등의 형태로 현금 지급 불가

⑥ 산업공동기술개발과제 부적정 집행

□ 지적내용

-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임에도 연구책임자 1인에게 연구수당 전액 지급
-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고 임의 산정(1백만원/인당)하여 참여연구원 2인에게 인건비 집행

□ 관련규정

-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육성사업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관리 매뉴얼

※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(2018.4.11. 개정) 준용

⑦ 기타 사업비 부적정 집행

□ 지적내용

-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강사료 한도초과 집행
-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비의 주요 집행 제한 항목인 사회맞춤형 학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 집행
- 협약산업체 취업확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신입사원 직무연수비용 집행 시 기 취업자에 대한 직무연수비를 포함하여 집행

□ 관련규정

-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동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집행해야 함

<사회맞춤형 선도전문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>

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

[별표1]

- 강사료 및 평가비 지급기준 : 대학 자체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
 ※ 단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2]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

② 사회맞춤형 선도전문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

<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 집행 기준>

○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비(협약반별)

[주요 집행 제한 항목]

- 내부교원에게 수당 지급 불가(내부 교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, 심사비 등)
-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 지급 불가

3. 대학혁신지원사업

①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대가성 비용 집행

□ 지적내용

- A 대학은 Culture Tour를 진행하면서 우수자 선발과 별개로 이수자 전원에게 뮤지컬 티켓을 구매하여 지급
- 2021년 평생직업교육 우수사례집 발간을 위한 평생직업교육과정 수기 공모전으로 응모한 전원에게 2만원 상당의 베이커리 상품권 지급

□ 관련규정

- 봉사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,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 불가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_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>

<주요 집행제한 항목_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>

- 경상비 성격의 경비
 - 봉사 수혜대상에게 직접지원하는 현금,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(상품권) 등

②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 응시료 등 지급

□ 지적내용

- △△대학은 기술관련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은 인성코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증 응시료 지급
- 기술 교육과 무관한 도서를 구입하고 프로그램 참여학생에게 배포

□ 관련규정

- 기술교육 관련 자격증 시험응시료 외 시험응시료 등은 집행 불가

<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I, II 유형 FAQ>

Q-21	시험 응시료는 집행 가능한가요?
A-21	('19.6 정의서 개정) 기술교육 관련 자격증 시험응시료는 사업비로 지급 가능하나, 학원 수강료, 외국어 시험 응시료는 지급 불가합니다. 해당 자격증이 관련 자격증인지에 대해서는 동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판단하되, 해당 근거자료를 철저히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.

4. 대학창의적자산 실용화지원(BRIGE+)

□ 지적내용

- 대학-협력기관 간 융·복합 프로그램 추진시 협력기관의 간접비를 협력기관 직접비의 10%를 초과하여 집행

□ 관련규정

- 협력기관의 간접비는 협력기관 직접비의 10% 이내로 편성 가능

<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(BRIDGE+)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사업비 비목 구분 및 세부집행기준>

○ 대학-협력기관 간 융·복합 프로그램 추진비

- 국고지원금의 15% 이상을 대학-협력기관 간 융·복합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협력기관 실용화개발 지원 관련 경비로 집행 가능
- 협력기관에 대한 지원규모(과제 수, 과제당 지원금액)는 주관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, 과제당 지원금액은 직접비와 간접비(협력기관 직접비의 10% 이내)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

5.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

□ 지적내용

- 소과제 추진 시 기관지원경비 한도(소과제 사업비의 3%)를 초과하여 사업비 집행
- 소과제 추진 시 연구개발과제가 아닌 과제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집행

□ 관련규정

- 사업비는 동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함

<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_항목별 세부 집행기준>

○ 혁신인재지원금

<기관지원경비 집행 시 주요사항>

- 기관지원경비는 주관기관에 한해 각 소과제 사업비의 3% 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
- 기관지원경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

<소과제 중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요사항>

-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이 기존 직원을 활용하여 소과제에 참여하는 경우, 참여 인력은 총 연봉 100% 이내에서 해당 과제 기여율에 따라 소과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함